스토어허브 도심형 스마트 셀프 보관 서비스

스토어허브코리아㈜

1. 실증특례 지정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 · 게시)

- 유효기간 : 2024년 12월 18일 ~ 2026년 12월 17일

- 해당 기술 · 서비스의 내용 :
  도심지 건물 내 일정 공간 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, 관리하는 서비스

2. 이용자 유의사항

- 실증특례의 내용 :
  스토어허브코리아 주식회사가 '스토어허브 도심형 스마트 셀프 보관 서비스'를 실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대해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

- 부가조건 :
  1. 안전 등을 위해 물품 보관•적재에 따른 구조•안전, 피난•방화 문제 측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창고시설과의 구분을 위한 면적 등 검토 선행필요
  2.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

-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:
  - 고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웹사이트에 고지
  -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

3. 이용자 보호방안

-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  [영업배상 책임보험]
  - 일반배상책임 (1사고당) 3,000,000,000원 (총보상한도) 무제한
  - 물적손해확장담보 (1사고당) 1,000,000,000원 (총보상한도) 무제한
  [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]
  - (1청구당) 500,000,000원 (총보상한도) 500,000,000원

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   해당사항 없음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

지정번호	2024-22호	지정연월일	2024년 6월 28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스토어허브코리아 주식회사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법인(110111-5914745), 사업자(547-87-00873)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0, 지하4층(대치동, 샹제리제센터)		
	대표자 박상용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명칭 및 주요내용 (명칭) 스토어허브 도심형 스마트 셀프 보관 서비스 (주요내용) 도심지 건물 내 일정 공간 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, 관리하는 서비스		
유효기간	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지정 조건	○ (특례내용) 스토어허브코리아 주식회사가 '스토어허브 도심형 스마트 셀프 보관 서비스'를 실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대해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○ (조건) 붙임의 '부가조건'을 준수할 것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2024년 6월 28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